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2025. 6. 13.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42호로 2025년 5월 30일 김지연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 「영등포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제5조)
- 라. 부모교육의 대상, 부모교육의 내용 등(안 제6조 ~ 제7조)
- 마. 부모교육의 위탁, 재정지원(안 제8조 ~ 제9조)
- 바. 협력체계의 구축, 포상(안 제10조 ~ 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5. 6. 3.~2025. 6. 10.)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제정 배경 및 취지

- 보건복지부 1)발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 중 85.9%가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의 양육 역량이 아동의 안전과 직결됨을 시사함.
- 또한,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맞벌이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로 인해, 기존의 획일적인 부모 역할만으로는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가족 특성과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실제, 국가권익위원회 2)연구자료에 따르면,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4.2%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부모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 따라
-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통해 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고, 이를 위한 교육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1)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2)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2021)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본 조례안에 골자인 ‘부모교육’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교육의 방법(지식, 정보 또는 기술 등의 제공)과 목적(능력, 자질 및 태도 함양)을 명확히 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노력의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본 조례안이 ‘부모교육’에 관한 기본조례임을 명시하여, 타 조례 적용에 관하여 명확히 함.
-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제1항은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제2항은 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여 계획의 전문성 및 현장 적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제3항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부모교육의 대상)는 혼인 여부나 자녀의 유무와 관계 없이 구민 누구나 교육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와 양육 환경을 포용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는 현장 강의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방식을 통해 부모교육의 접근성을 제고하였으며,
 - 교육 내용 또한 자녀의 발달 단계별 교육, 가족 내 건강한 관계 형성, 가정폭력 예방 등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건강

가정 조성'이라는 본 조례안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규정함.

- 안 제8조(부모교육의 위탁)는 부모교육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9조(재정지원)는 부모교육 시행 또는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 등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 아동학대 사례 중 상당수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한부모·조손가정·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부모교육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는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자료

1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양육, 가족교육·상담 등 가족구성원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교육·연구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